

전문직(계약직) 공개채용 공고 (재공고)

서울에너지공사 건설기술지원단(부문별 전문가/계약직_배관·전기·제어·건축)
채용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서울에너지공사 사장

1.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

채용 분야	채용 인원	담당업무
직군	직종	
합계	5명	*열병합 및 복합화력 건설발주
전문직 (계약직)	배관	*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설계·시공 전문적 검토 및 피드백 :(분야별) 도면 파악, 현장 조사, 설계·감리 시공검토, 공사 구조물 경제성, 시공성 및 운영성 검토, 시공관리
	전기	1명
	제어	1명
	건축	*열병합발전 설비 설계·시공 산출물 종합 검토

2. 채용조건

채용분야	인원	채용형태	급여수준	계약기간	근무형태	근무지
플랜트 설계·시공 전문가	5명	전문직 (계약직)	연봉 4.5 ~ 6.5천만원 한도 *단장(1인) 직책수행비 월20만원 별도 지급	22개월 *수습기간 2개월 포함	통상근무	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55 (건설처 공시관리부)

3. 지원자격

가. 기본사항

- 1) 연령: 제한 없음
- 2) 병역: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(단, 군 복무 중인 자는 매 전형 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일로부터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 자)
- 3) 기타: 임용예정일(**'20. 10. 30.**)부터 근무 가능한 자
- 4) 응시제한: 공사 규정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, 「부패방지 및 국민
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
제한에 해당하는 자 [별첨1]

나. 필수요건

채용직위	지원자격
전문가	<p>【필수】 *발전소(원자력, 석탄, 가스복합) 배관분야 설계 및 시공 분야(시공감리 포함) 9년 이상 경력</p> <p>【우대】 *복수기 직접냉각방식(Once-Through) 설계 경력 *천연가스 배관 설계 경험자, 플랜트 배관 Stress Analysis 검토 경력</p>
	<p>【필수】 *송·변전설비(송·수전전압 154kV 이상) 설계 및 시공 분야(시공감리 포함) 9년 이상 경력</p> <p>【우대】 *발전설비 및 전력설비 고장전류계산, 보호협조 검토 경력 *집단에너지 전기설비 설계 경력</p>
	<p>【필수】 *발전소(원자력, 석탄, 가스복합 및 집단에너지) 분산제어설비 설계 및 시공 분야(시공감리 포함) 9년 이상 경력</p> <p>【우대】 *발전소 현장제어기기 분야 설계 경력 *통합관제센터(Control Tower) 기획 및 설계 경력</p>
	<p>【필수】 *발전소(원자력, 석탄, 가스복합) 건축구조물 및 마감 설계 9년 이상 경력</p> <p>【우대】 *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 설계, 내진설계, 건축 마감 설계 경력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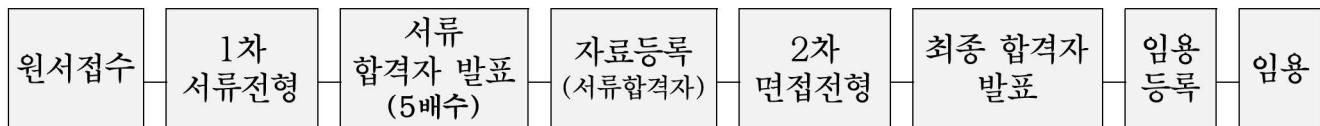
다. 우대요건

구 분	우대자격요건	우대내용
취업지원 대상자	*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*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*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*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*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*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	면접전형 만점의 5 ~ 10% 가산

- 1) 우대사항 증빙서 제출자에 한해 가점 부여(증빙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
- 2) 국가유공자법 제31조 1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어 이번 채용은 적용하지 않음

4. 전형절차 및 일정

가. 전형절차



※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

나. 단계별 일정 및 선발방법

1) 원서접수

- 접수기간: 2020. 10. 7.(수) ~ 10. 14.(수) 16:00까지

- ※ 토·일·공휴일 제외
- ※ 접수종료일 마감시간(16시) 이후 접수 불가
- 접수방법: 전자우편 접수(jah2627@i-se.co.kr)
 - ※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- 제출서류: 원본을 순서대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(총 3개 파일, 양식 불임참조)
 - ※ 파일명: '1.성명_입사지원서',
'2.성명_자기소개서·경력기술서·직무수행계획서',
'3.성명_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'와 같이 작성
- 기타사항: 서류접수 후 지원자 E-mail로 접수여부(접수번호) 회신
 - ※ 접수 회신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 요망(☎02-2640-5184)

2) 서류전형

- 심사일시: 2020. 10. 15.(목)

- 평가방법: 응시자의 지원 자격·경력 등의 충족 여부 심의

구 분	내 용
평가방법	블라인드
평가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적부심사: 제출서류 구비 여부, 필수경력 충족 여부- 실질심사(100점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: 설계업무경력(45점), 시공업무경력(45점), 설비운영경력(10점)※ 발전소 유형별 경력인정 기준: GT·열병합발전소 100%, 기타 50%- 가점심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: 다중경력(최대 8점), 우대경력, 우대자격증 등에 따라 부여

※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(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 처리)

※ 각 서류심사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평점의 평균점수가 45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

- 발표일시: 2020. 10. 16.(금)

※ 공사 홈페이지 채용정보게시판(<http://www.i-se.co.kr/intro82>)

3) 자료등록(서류전형 합격자)

- 제출기간: 2020. 10. 16.(금) ~ 20.(화) 16:00까지

- 제출방법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

- 제출서류

[공 통] 주민등록초본 1부

[해당증빙] 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자격증 사본 각1부.

*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모아찍기 등으로 인쇄 후 스캔 금지

*경력(재직)증명서는 아래 사항이 모두 입증되어야 경력으로 인정 가능

- 경력(재직)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
- 필수 자격 요건이 경력 기간을 검증하는 경우 반드시 재직 부서별 근무 기간, 담당업무 분야 또는 업무 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, 미기재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음
- 경력입증은 경력(재직)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공고일 이후 발급분)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 근무 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 기간을 적용함

4) 면접전형

- 심사일시: 2020. 10. 22.(목)

- 평가방법: 경험면접으로 채용 분야별 역량 검증에 대한 면접

구 분	내 용
평가방법	블라인드 면접
평가기준	평가기준 요소별 배점(100점 만점) -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(10점) -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(50점) -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판단력(20점) - 예의·품행 및 성실성(10점) - 창의력, 의지력, 기타발전가능성(10점)

※ 각 면접심사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상 및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의 평균 점수가 만점의 60%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1배수 선발

※ 면접시험 채점표상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가 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을 “미흡”으로 평가하였거나,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“미흡”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선발에서 제외

- 발표일시: 2020. 10. 23.(금)

※ 공사 홈페이지 채용정보게시판(<http://www.i-se.co.kr/intro82>)

5) 최종합격자

- 면접전형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,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입지원대상자,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사장이 확정
- **임용등록: 2020. 10. 23.(금) ~ 28.(수)**
 - ※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부적격 시 최종임용에서 제외
 - ※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운영 계획에 따라 추가합격자 결정

6) 임용

- 2020. 10. 30.(금) 예정

5. 기타 운영 및 안내사항

○ 예비합격자 운영

- 각 전형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합니다. 단, 선발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
- 향후 채용 비리 피해자가 발생 시 피해자 구제에 활용 및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- 예비합격자 운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.

○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도

- 부정 합격자 발생 시

: 허위서류 제출, 부정 청탁 등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

-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방안

[서류전형] 차기 동일 분야 채용 견에 대하여 면접전형 기회 부여(1회 한함)

[면접전형] 채용 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 임용

○ 유의사항

- 본 채용은 총 근무기간이 22개월로 기간 만료 시 당연 고용관계가 소멸하며, 정규직 전환 등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
- 서류합격자 자료등록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준비 소요시간이 상당한 증빙서류(경력증명서 등)에 대하여는 사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에 한 해 입사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, 허위기재, 제출서류 미제출, 연락 불능,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채용비리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,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본인인 경우에 한해 확인을 거쳐 반환합니다.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가 파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 포기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, 신체·정신상의 이상 및 기타 사유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계약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,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 계약이 해지됩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 일정 및 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대응지침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
-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Q&A 또는 채용 담당자(02-2640-518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첨1]

응시제한 사유(채용결격사유)

가. 공사 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7.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8의2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을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9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확인신체검사, 징집·소집을 기피하거나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
10.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
11. 결격사유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
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- 마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
 - 바. 안전 감독 업무, 인·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
 - 사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.
다만,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.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[별첨2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
주 소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
반환청구서류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